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19호 2022. 5. 10.(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68호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1
남해군 고시 제2022-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4
남해군 고시 제2022-73호 남해군관리계획(힐링빌리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5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579호 아난티남해리조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공람·공고	17
남해군 공고 제2022-602호 보상 계획 열람·공고	28
남해군 공고 제2022-605호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	34
남해군 공고 제2022-614호 (가칭)남해군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공고 ..	39
남해군 공고 제2022-62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41
남해군 공고 제2022-635호 남해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제공표	42
남해군 공고 제2022-644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43
남해군 공고 제2022-646호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45
남해군 공고 제2022-65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47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68호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6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나. 위 치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366-6번지 일원
- 다. 사업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L=150m
- 라. 사업비 : 금3,000,000,000원(금삼십억원)
- 마.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3년 12월
- 바. 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

2. 설계도서 열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3. 다른 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4.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5.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비 고
사업내용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정비사업	
사업비(천원)	3,000,000	200,000	600,000	2,200,000	

6. 유지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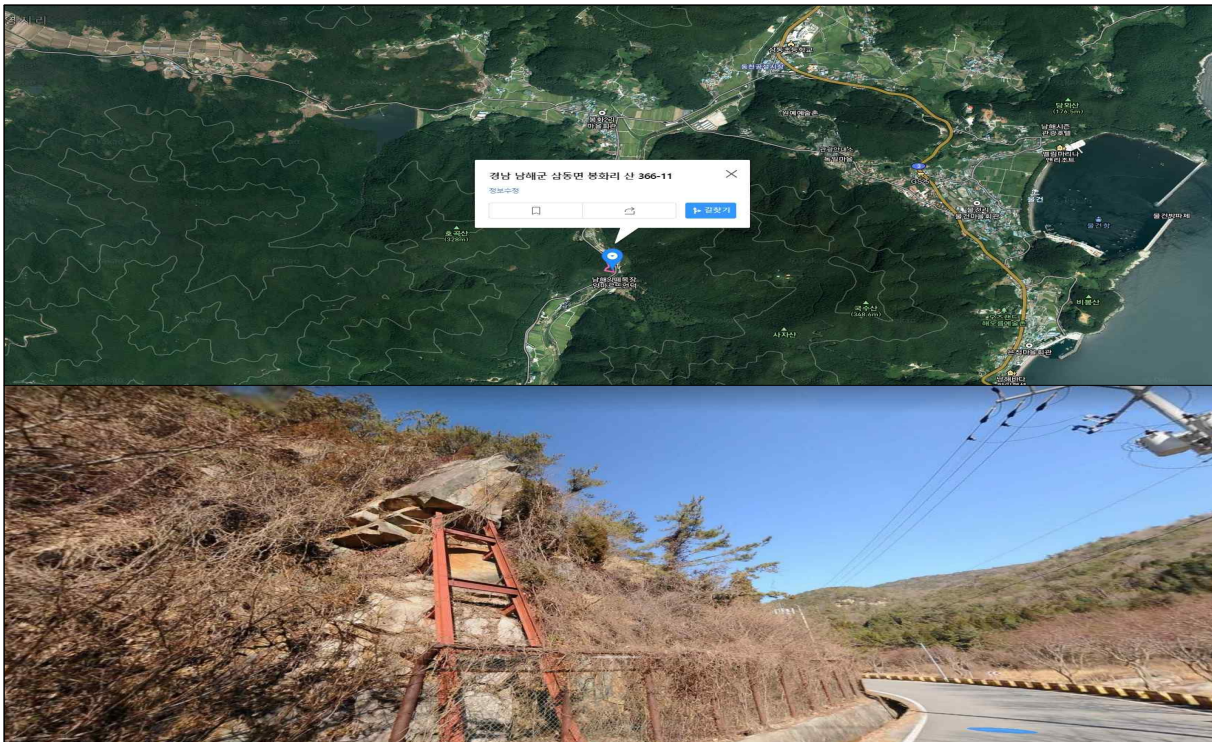
가. 정비공사 완료 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을 조정하고 (필요시)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해제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로 안전 및 유지관리 만전을 기함.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명세 : 엑셀참조

8. 기타사항 :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55-860-3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위치도



용 지 조 서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1	삼동면 봉화리	산366-9	도	2,714	1,697	00		남해군	
2	삼동면 봉화리	산366-11	임	2,461	2,461	00		남해군	
3	삼동면 봉화리	산368-4	임	1,764	1,764	00		남해군	
4	삼동면 봉화리	1279	도	2,642	266	00		남해군	
5	삼동면 봉화리	1275-4	도	286	89	00		남해군	
6	삼동면 봉화리	산368-2	도	198	198	00		남해군	
7	삼동면 봉화리	1275-2	도	53	53	남해군 삼동면		신주*	
8	삼동면 봉화리	1275-3	도	523	254	00		경상남도	
9	삼동면 봉화리	산368-3	도	24	24	00		남해군	
10	삼동면 봉화리	2185-5	도	2,183	504	00		국토교통부	
합 계				12,848	7,310				

남해군 고시 제2022-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6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봉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남해읍장)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용배수로 재설치
5. 점용위치 :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5-1번지(530-3인근)
6. 점용면적 : 567㎡(영구:54㎡)
7. 점용기간 : 2022. 5. 6. ~ 2022. 6. 31.

남해군 고시 제2022-73호

**남해군관리계획(힐링빌리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힐링빌리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붙임]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4	창선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137,949	경상남도 고시 제2018-244호 (2018.07.05)	
변경	14	창선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138,075.5		

나.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4	창선 개발진흥지구	○ 면적변경 - A = 137,949㎡ → 138,075.5㎡ (증 126.5㎡)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6	힐링빌리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복합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171,696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주거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42 일원	33,747		
			관광 휴양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137,949		
변경	16	힐링빌리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복합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171,636.6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주거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42 일원	33,561.1		
			관광 휴양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138,075.5		

나.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6	힐링빌리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 면적변경 - A = 171,696㎡→171,636.6㎡(감59.4㎡) - 주거형 : 33,747㎡→33,561.1㎡(감 185.9㎡) - 관광휴양형 : 137,949㎡→138,075.5㎡(증 126.5㎡)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확정 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3,747	감)185.9	33,561.1	100.0	
주거용지	6,822	감)364.9	6,457.1	19.2	
녹지용지	15,216	증)724.0	15,940.0	47.5	
소공원	301	-	301.0	0.9	
조성녹지	14,805	증)811.8	15,616.8	46.5	
보행자전용도로	110	감)87.8	22.2	0.1	
공공시설용지	11,709	감)545.0	11,164.0	33.3	
커뮤니티센터	4,362	감)576.1	3,785.9	11.3	
관리사무소	1,001	감)1.0	1,000.0	3.0	
공공하수처리시설	434	증)97.5	531.5	1.6	
도로	5,912	감)65.4	5,846.6	17.4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7,949	증)126.5	138,075.5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49,223	증)131.6	49,354.6	35.7	
녹지용지	83,525	감)61.0	83,464.0	60.5	
조성녹지	20,499	감)61.0	20,438.0	14.8	
원지정보전녹지	63,026	-	63,026.0	45.7	
공공시설용지	5,201	증)55.9	5,256.9	3.8	
주차장	5,201	증)55.9	5,256.9	3.8	

남 해 군 공 보

(8) 제 719 호

2022년 5월 10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기정	4	604	5,912	-	-	-	3	560	5,731	1	44	181
	변경	4	595	5,846.6	-	-	-	3	553	5,676.0	1	42	170.6
중로	기정	1	136	2,325	-	-	-	1	136	2,325	-	-	-
	변경	1	136	2,289.6	-	-	-	1	136	2,289.6	-	-	-
소로	기정	3	468	3,587	-	-	-	2	424	3,406	1	44	181
	변경	3	459	3,557.0	-	-	-	2	417	3,386.4	1	42	170.6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	16	집산 도로	136	창선면 진동리 641-3도	창선면 진동리 653-1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변경	중로	2	6	16	집산 도로	136	창선면 진동리 647-3도	소로2-12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27	8	국지 도로	157	창선면 진동리 653-1전	창선면 진동리 664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변경	소로	2	127	8	국지 도로	157	중로 2-6	창선면 진동리 1422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28	8	국지 도로	267	중로 2-6	창선면 진동리 664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변경	소로	2	128	8	국지 도로	260	중로 2-6	창선면 진동리 1428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9	4	국지 도로	44	소로 2-128	창선면 진동리 674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변경	소로	3	49	4	국지 도로	42	소로 2-128	창선면 진동리 1421잡	일반 도로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6호선	중로2-6호선	○ 구역 및 기종점명변경	○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구역 및 기종점명 변경
소로2-127호선	소로2-127호선	○ 구역 및 기종점명변경	○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구역 및 기종점명 변경
소로2-128호선	소로2-128호선	○ 구역 및 종점 변경	○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구역 및 종점 변경
소로3-49호선	소로3-49호선	○ 구역 및 기종점변경	○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구역 및 기종점 변경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소공원	소공원	기정	창선면 진동리 653전	301	-	301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변경	창선면 진동리 1414공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소공원	○ 지번 변경	○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번 변경

다)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공공하수처리 시설	기정	창선면 진동리 674전	434	증)97.5	531.5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변경	창선면 진동리 1421잡					

○ 하수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공공하수처리시설	○ 구역 및 지번 변경 - A = 434m ² → 531.5m ² (증 : 97.5m ²)	○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구역 및 지번 변경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가)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기정	창선면 진동리 639전	5,201	증)55.9	5,256.9	남해군 고시 제2019-136호 (2098.10.24)	
			변경	창선면 진동리 1424차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구역 및 지번 변경 - A = 5,201㎡ → 5,256.9㎡ (증 : 55.9㎡)	○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구역 및 지번 변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1) 기정

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1	1	3,447	진동리 667 전	3,447	주거용지
2	2	3,375	진동리 668 임	3,375	
3	3	1,001	진동리 642 대	1,001	관리사무소
4	4	4,362	진동리 678 전	4,362	커뮤니티센터
5	5	434	진동리 674 전	434	공공하수처리시설
6	6	301	진동리 653-1 전	301	소공원
7	7	2,241	진동리 665 전	2,241	조성녹지
8	8	12,564	진동리 669 전	12,564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I	I	4,208	진동리 680 전	4,208	관광휴양시설 (야외휴게공간)
II	II	45,015	진동리 687 전	45,015	관광휴양시설 (특별계획구역)
III	III	5,201	진동리 639 전	5,201	주차장
IV	IV	10,574	진동리 산197-6 임	10,574	조성녹지
V	V	9,925	진동리 산197-37 임	9,925	
VI	VI	63,026	진동리 산197-17 임	63,026	원지형보전녹지

2) 변경

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m ²)	
1	1	3,224.7	1-1	진동리 1416 대	2,073.0	주거용지
			1-2	진동리 1417 대	1,151.7	
2	2	3,232.4	2-1	진동리 1418 대	1,855.6	
			2-2	진동리 1419 대	1,376.8	
3	3	1,000.0	3-1	진동리 1413 대	1,000.0	관리사무소
4	4	3,785.9	4-1	진동리 1422 대	3,785.9	커뮤니티센터
5	5	531.5	5-1	진동리 1421 잡	531.5	공공하수처리시설
6	6	301.0	6-1	진동리 1414 공	301.0	소공원
7	7	2,158.4	7-1	진동리 1415 공	2,158.4	조성녹지
8	8	13,458.4	8-1	진동리 1420 공	13,458.4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m ²)	
I	I	4,339.6	I-1	진동리 1423 공	4,339.6	관광휴양시설 (야외휴게공간)
II	II	45,015.0	II-1	진동리 687 전	45,015.0	관광휴양시설 (특별계획구역)
III	III	5,256.9	III-1	진동리 1424 차	5,256.9	주차장
IV	IV	10,513.0	IV-1	진동리 산197-6 입	10,513.0	조성녹지
V	V	9,925.0	V-1	진동리 산197-19 입	9,925.0	
VI	VI	63,026.0	VI-1	진동리 산197-17 입	63,026.0	원지형보전녹지

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기정

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2	1, 2	용도	주거용지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나목. 단,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하며 편의점은 제외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3	3	용도	공공시설용지 (관리사무소)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공시설용지 (커뮤니티센터)	4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사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 1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소공원	6	용도	허용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관광휴양시설	I	용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관광사업중 ·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련시설 · 제6호 유원시설업 관련시설 · 제7호 관광 편의시설업 관련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 가목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련시설 · 나목 관광농원사업 관련시설 ○야외휴게공간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 16미터 이하	
주차장	III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해당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2) 변경

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2	1-1, 1-2, 2-1, 2-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나목. 단,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하며 편의점은 제외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3	3-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4	4-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사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 1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6	6-1	용도	허용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I	I-1	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관광사업중 ·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련시설 · 제6호 유원시설업 관련시설 · 제7호 관광 편의시설업 관련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 가목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련시설 · 나목 관광농원사업 관련시설 ○야외휴게공간 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 16미터 이하
III	III-1	용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해당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서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시설
			불허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힐링빌리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창선면 진동리 산197-6번지 일원	45,015	-	45,015	남해군 고시 제2019-136호 (2019.10.24.)

2)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계획지침(변경없음)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위락시설	
	불허용도	<p>○ 특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건축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호 단독주택 2. 제2호 공동주택 3. 제6호 종교시설 4.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6.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제17호의 공장 9.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4. 제25호의 발전시설 15.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제28호의 장례식장 	
밀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높이	4층 이하 / 28m이하	
배치	입지의 특성 및 용도 등의 개발의도에 맞게 배치		
형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형태 추구		
색채	통일성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재료와 색조 사용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579호

아난티남해리조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아난티남해리조트: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7일

남 해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가. 계 획 명 : 아난티남해리조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 나.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311-1번지 일원
- 다. 계획 면적 : 831,930㎡
- 라.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아난티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다. 정보통신망 : 남해군청 홈페이지(<https://www.namhae.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공람사항

- 가. 아난티 남해 리조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 <붙임1>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초안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4.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 다. 제 출 처 : 공람장소(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055 - 860-3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남해군관리계획(아난티남해리조트: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5	아난티남해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면 덕월리 311-1번지 일원	833,946	경상남도고시 제2004-19 (2004.01.15.)	
변경	15	아난티남해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면 덕월리 311-1번지 일원	831,930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아난티남해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 면적 변경(감: 2,016m ²) A=833,946m ² → 831,930m ²	○ 이용객들의 원활한 이용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추가 부지확보 및 개발계획 변경

4.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33,946	감) 2,016	831,930	100.00	-
체육시설용지	755,946	감) 38,236	717,710	86.27	-
체육시설	351,201	증) 20,350	371,551	44.66	-
골프코스	339,412	증) 18,654	358,066	43.04	I-1
코스시설	215,996	증) 9,755	225,751	27.13	
그늘집1	830	감) 830	-	-	
그늘집2	720	-	720	0.09	
화장실	-	증) 250	250	0.03	
연습그린	833	-	833	0.10	
저류지	100,979	-	100,979	12.14	
관리도로	20,054	증) 9,479	29,533	3.55	
묘포장	480	감) 480	-	-	
직원 숙소	-	증) 2,945	2,945	0.35	
클럽하우스	1,549	증) 174	1,723	0.21	I-3
축구장	6,080	감) 147	5,933	0.71	I-4
코스관리동	3,680	감) 796	2,884	0.35	I-5
공공시설	33,331	감) 9,587	23,744	2.85	-
주차장	1,258	감) 1,258	-	-	-
도로	4,183	증) 40	4,223	0.51	I-6
도로	27,890	감) 10,899	16,991	2.04	I-7
오수처리장	-	증) 2,530	2,530	0.30	I-8
녹지	371,414	감) 48,999	322,415	38.76	-
원형보전	64,038	감) 2,989	61,049	7.34	I-9
조성	307,376	감) 46,010	261,366	31.42	I-10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광·휴양시설용지	78,000	증) 36,220	114,220	13.73	-
숙박시설	39,590	증) 33,512	73,102	8.79	-
휴양콘도미니엄	10,145	-	10,145	1.22	II-1
	903	-	903	0.11	II-2
	2,582	-	2,582	0.31	II-3
	7,600	증) 4,797	12,397	1.49	II-4
	3,750	-	3,750	0.45	II-5
	4,657	-	4,657	0.56	II-6
	4,141	-	4,141	0.50	II-7
	4,225	-	4,225	0.51	II-8
	1,380	증) 1,420	2,800	0.34	II-9
	207	-	207	0.02	II-10
	-	증) 14,350	14,350	1.72	II-11
	-	증) 12,945	12,945	1.56	II-12
휴양문화시설	-	증) 1,434	1,434	0.17	-
피크닉장	-	증) 734	734	0.09	II-13
관광안내센터	-	증) 700	700	0.08	II-14
공공시설	12,506	증) 964	13,470	1.61	-
주차장	2,639	감) 2,639	-	-	-
	78	감) 78	-	-	-
	158	감) 158	-	-	-
	169	감) 169	-	-	-
	200	감) 200	-	-	-
	189	감) 189	-	-	-
	100	감) 100	-	-	-
	-	증) 2,039	2,039	0.24	II-15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4,503	증) 51	4,554	0.55	II-16
		655	증) 1,535	2,190	0.26	II-17
		3,815	증) 184	3,999	0.48	II-18
		-	증) 688	688	0.08	II-19
녹지		25,904	증) 310	26,214	3.16	-
원형보전		706	감) 564	142	0.02	II-20
		-	증) 26	26	-	II-21
		431	증) 375	806	0.10	II-22
		718	감) 718	-	-	-
		126	-	126	0.01	II-23
		5,193	감) 102	5,091	0.61	II-24
		-	증) 568	568	0.07	II-25
		8,657	증) 637	9,294	1.12	II-26
		5,353	감) 230	5,123	0.62	II-27
		734	감) 734	-	-	-
		-	증) 419	419	0.05	II-28
조성		3,882	감) 2,818	1,064	0.13	II-29
		104	-	104	0.01	II-30
		-	증) 2,717	2,717	0.33	II-31
		-	증) 734	734	0.09	II-32

5.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남해군 남면)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755,946	717,710	-	-	-	755,946	717,710	
I-1	I	755,946	717,710	I-1	I-1	평산리 482-1잡 일원	339,412	358,066	골프코스
-				I-2	-	덕월리 307-2임 일원	480	-	묘포장 (폐지)
I-2				-	I-2	덕월리 282-3전 일원	-	2,945	직원숙소
I-3				I-3	I-3	덕월리 306-2임 일원	1,549	1,723	클럽 하우스
I-4				I-4	I-4	덕월리 산21-18임 일원	6,080	5,933	축구장
I-5				I-5	I-5	덕월리 산35-5임 일원	3,680	2,884	코스 관리동
-				I-6	-	덕월리 306-9임 일원	1,258	-	주차장 (폐지)
I-6				I-7	I-6	덕월리 282-5도 일원	4,183	4,223	주차장
I-7				I-8	I-7	덕월리 311-3잡 일원	27,890	16,991	도로
I-8				-	I-8	덕월리 312-1전 일원	-	2,530	오수 처리장
I-9	I-9	I-9	덕월리 307-2임 일원	64,038	61,049	원형보전 녹지			
I-10	I-10	I-10	덕월리 311-1잡 일원	307,376	261,366	조성 녹지			

나.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남해군 남면)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78,000	114,220	-	-	-	78,000	114,220	
II-1	II	78,000	114,220	II-1	II-1	덕월리 320임 일원	10,145	10,145	휴양 콘도 마니엄
II-2				II-2	II-2	덕월리 316임 일원	903	903	
II-3				II-3	II-3	덕월리 307-4임 일원	2,582	2,582	
II-4				II-4	II-4	덕월리 306-11임 일원	7,600	12,397	
II-5				II-5	II-5	덕월리 304-3임 일원	3,750	3,750	
II-6				II-6	II-6	덕월리 303-1임 일원	4,657	4,657	
II-7				II-7	II-7	덕월리 270-1임 일원	4,141	4,141	
II-8				II-8	II-8	덕월리 269임 일원	4,225	4,225	
II-9				II-9	II-9	남면 덕월리 산9-4임 일원	1,380	2,800	
II-10				II-10	II-10	남면 덕월리 산7임 일원	207	207	
II-11				-	II-11	남면 덕월리 산14-3임 일원	-	14,350	
II-12				-	II-12	남면 덕월리 340임 일원	-	12,945	
II-13				-	II-13	덕월리 266-11임	-	734	피크닉장
II-14				-	II-14	덕월리 307-17임 일원	-	700	관광 안내센터
-				II-11	-	덕월리 308-2임 일원	2,639	-	주차장 (폐지)
-	II-12	-	덕월리 산9-5임 일원	78	-				
-	II-13	-	덕월리 산19-5임 일원	158	-				
-	II-14	-	덕월리 269-3임 일원	169	-				
-	II-15	-	덕월리 산9-4임 일원	200	-				
-	II-16	-	덕월리 265전 일원	189	-				
-	II-17	-	덕월리 266-2임 일원	100	-				
II-15	-	II-15	덕월리 309-22임 일원	-	2,039	주차장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남해군 남면)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II-16	II	78,000	114,220	II-18	II-16	덕월리 309-16임 일원	4,503	4,554	도로
II-17				II-19	II-17	덕월리 322-1전 일원	655	2,190	
II-18				II-20	II-18	덕월리 323-17임 일원	3,815	3,999	
II-19				-	II-19	덕월리 307-17임 일원	-	688	
II-20				II-21	II-20	덕월리 307-11임 일원	706	142	원형녹지
II-21				-	II-21	덕월리 307-17임 일원	-	26	
II-22				II-22	II-22	덕월리 307-12임 일원	431	806	원형녹지 (폐지)
-				II-23	-	덕월리 307-5임 일원	718	-	
II-23				II-24	II-23	덕월리 307-10임 일원	126	126	원형녹지
II-24				II-25	II-24	덕월리 269-8임 일원	5,193	5,091	
II-25				-	II-25	덕월리 278전 일원	-	568	
II-26				II-26	II-26	덕월리 산13임 일원	8,657	9,294	
II-27				II-27	II-27	덕월리 323-11임 일원	5,353	5,123	원형녹지 (폐지)
-				II-28	-	덕월리 320-2임 일원	734	-	
II-28				-	II-28	덕월리 340임 일원	-	419	원형녹지
II-29				II-29	II-29	덕월리 303-2임 일원	3,882	1,064	
II-30				II-30	II-30	덕월리 266-2임 일원	104	104	
II-31				-	II-31	덕월리 산5-2임 일원	-	2,717	
II-32				-	II-32	덕월리 320-2임 일원	-	734	조성녹지

7.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체육시설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2 (신규)	용 도	지정용도	직원숙소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나.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11 (신규)	용 도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I-12 (신규)	용 도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0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13 (신규)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피크닉장 및 부대시설(관광 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I-14 (신규)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관광안내센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의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남해군 공고 제2022-602호

(참조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2-94호)

보상 계획 열람 · 공고

진주국토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국도3호선 남해 초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토지 등에 대한 관계조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7일

남 해 군 수

- 1. 공 사 명 : 국도3호선 남해 초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2. 사업시행자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3. 사업개요 : 교차로 1식
- 4. 사업기간 : 2021.11. ~ 2022.11.(360일)
-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일원(토지3필지,지장물3건,영농1건)

7. 열람방법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미조면사무소 게시관에 게재하고, 진주 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22년 6월중 추진 예정
(2022년 6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사업시행자 선정1인, 경남도지사 선정 1인)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2022.06.09)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2022.04.27. ~ 2022.05.11.(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미조면사무소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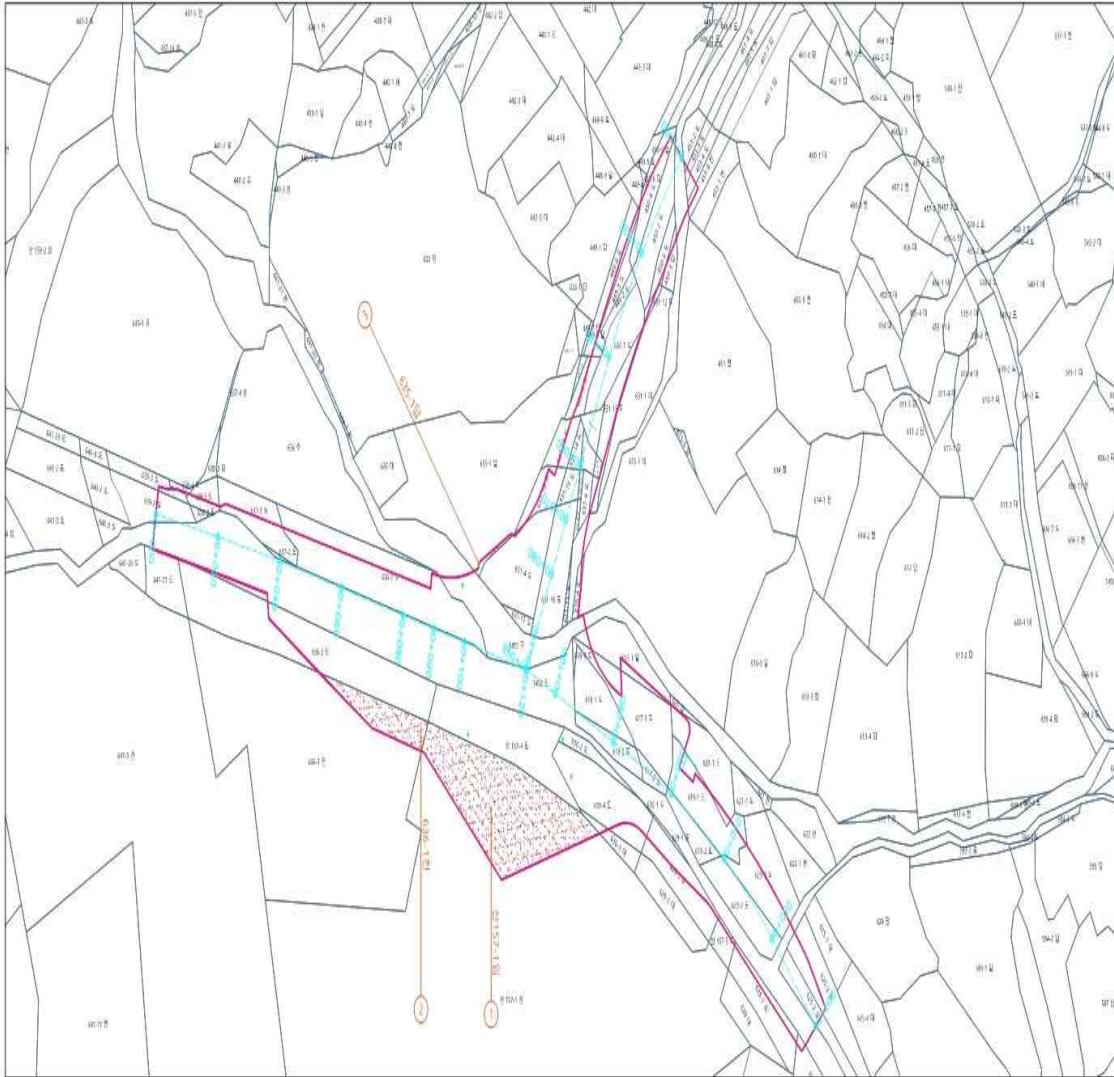
- ※ 소유자 확인란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타인의 서명은 불가합니다.
- ※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영 농 조 서

◆ 공시명 : 국도3호선 남해 초전지구교차로 개선공사

일련 번호	용지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영농현황		실제경작자		토지소유자		비고
			당 초	편 입	공부	실제	당 초	편 입	작물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6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6-1	636-4	전	전	2,174	136	들깨 등	13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이*업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이*업	
계							2,174	136		136					

■국도3호선 남해 초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용지도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공부성	면적	주소		
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57-6	원	9625	67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438-11		이민영
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86-4	전	2174	13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438-11		이민영
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85-4	답	979	10	남해군 미조면 동부리14번길27-2		박정세

서명명	서명	주최자 동경	도안명	축척	일시	승인	과	담당	의결	제호	도면번호	실면번호
국도3호선 남해 초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용지도		2021. 10.						55	

남해군 공고 제2022-605호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한 체육여가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안 제5조, 제7조)
- 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및 손해보상(안 제10조, 제11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5월 18일까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79-1
남해군청 체육진흥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65, 팩스 055-860-374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전화 055-860-8665, 8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는 읍·면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장소로 선정하되,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유용한 기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신규설치는 지양하고 기존 시설은 보수 및 유지 위주로 관리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바닥 및 기구 간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한다.

③ 야외운동기구의 흔들림이나 빠짐이 없도록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 총괄 및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이하 “점검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

2. 관리부서: 점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② 관리부서는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보수·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체 보수·정비가 어려운 경우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 표시문)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

안내 표시문 (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별지 서식]

야외 운동기구 점검 대장(제7조 관련)

순번	관리 번호	야외운동 기구명	설치 년도	위치	점검 일자	점검 결과	그 밖에 사항

※ 점검 체크 리스트

- 야외운동기구 운동방법, 주의사항, 안내문 등 훼손 여부
-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 흔들림 등 구조적 안정성 여부
- 목재부분의 부식, 금속재질의 부식 발생 여부
- 손잡이 흔들림 또는 파손, 볼트나 나사 풀림 상태
- 야외운동기구 바닥표면 상태, 기구 및 주변 청결 제반 운동 여건 등

남해군 공고 제2022-614호

(가칭)남해군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공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칭)남해군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결과’ 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9일

남 해 군 수

1. 공개대상 : (가칭)남해군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2. 용역개요

- 가. 용역명 : (가칭)남해군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 나. 용역기간 : 2021. 2. 16. ~ 2022. 3. 28. (중지기간 21.6.17.~9.30.)
- 다. 용역기관 : 경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주)
- 라. 용역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자 (재)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변○희
 - 공동연구원 (재)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김○영, 연구위원 이○상, 양○선
- 마. 용역내용 : (가칭)남해군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3. 공고기간 : 2022. 4. 29. ~ 5. 14.(토) 15일간

4. 의견제출

가. ‘(가칭)남해군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5. 14.(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의견서를 남해군 청년혁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청년혁신과(055-860-8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사항

- (가칭)남해군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우편, 팩스(fax) 055-860 -3750, 메일(e-mail) grace5@korea.kr 제출

남해군 공고 제2022-62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주소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소하천명	질골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죽리 1396번지(1373번지 인근)		
	면적	1,75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2. 5. 6. ~ 2022. 12. 31.		
	목적 및 사유	남해군 산림유역 관리사업(서면연죽지구)		

남해군 공고 제2022-635호

남해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제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남해군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5월 3일

남 해 군 수

(단위 :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비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38,627	38,611	16	5,518	청구권자 총수의 1/7 이상

남해군 공고 제2022-644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출입구간 : 고현면 갈화리 1549-1번지 일원

2. 출입기간 : 2022. 5. ~ 사업 종료 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2-646호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 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2. 5. ~ 2024.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고현면 갈화리 1549-1번지 일원	·사면정비 L=134.0m,	남해군/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2. 5. 9.~2022. 5. 30.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5. 9.~2022. 5. 30.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2-65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6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 332 외 17건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효력 발생일	비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55-860-3642~364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지정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입구구분	중진주소	도로명주소	표적발생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290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 332	20220429	20090427	두곡(전동, 잠동, 식을 불리던 곳)과 양재(산을 등지고 앉은 마을의 좌가 정남)를 연결하는 도로임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60-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22-9	20220428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룡리 889-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12-34	20220428	20090427	고려 흥선왕때 개장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246-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342-1	20220427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웅소리 산147-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376-30	20220425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25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한계로 247-13	20220425	20090427	산두곡이라는 고개의 동쪽인 동한계(동대)와 서쪽인 서한계(서대)를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금송리 283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1637-74	20220422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영지리 1734-10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죽방로 239	20220421	20090427	남해의 특산물인 죽방범 멸치가 생산되는 해안을 따라 이어진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기인리 146-10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790번길 97	20220421	20090427	흥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360-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202번길 50-8	20220419	20090427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277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12번길 14-30	20220419	20090427	미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1950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 256번길 45-31	20220415	20090427	두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186-14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270-10	20220411	20090427	남해본섬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면과 잠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612-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1180번길 6-3	20220408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8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611-34	20220406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풍현리 576-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풍현로 173번길 17-25	20220405	20091023	풍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영지리 1826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죽방로 301	20220401	20090427	남해의 특산물인 죽방범 멸치가 생산되는 해안을 따라 이어진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이리 67-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476번길 37-3	20220401	20090427	강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